

2017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502

I. 총 관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6. 11. 10.
- 회 부 일 : 2016. 11. 14.

II. 예산안 개요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 2017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130만원, 정무부시장실은 1억 9,780만원임.

<표-1> 2017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시장비서실	391,000	371,300	△19,700	△5.04
정무부시장실	197,800	197,800	-	-

- 2017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장비서실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1) 시장비서실

- 2017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3억 7,13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는 2016년도 3억 9,100만원에 비해 1,970만원(5.04%) 감액된 규모임.

<표-2> 2017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391,000	371,300	△19,700	△5.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000	80,000	△23,000	△22.3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3,800	287,100	3,300	1.16
시 장	277,200	277,200	-	-
비 서 실 장 (2 급)	6,600	9,900	3,300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¹⁾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6년 예산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²⁾ 통보(2015.4.23.)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43억원을 2017년부터 5년간 분할해 연간 8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야 하기 때문임(참고자료: 감사원 시정요구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³⁾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어 시장은 2억 7,720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2) 2010~2014년 서울시가 본청 4급 과장과 5급 팀장에게 각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부정적인 집행으로 판단 후 감사결과를 통보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

만원, 시장 비서실장(2급)은 990만원이 반영되었음(표-3).

- 2016년 예산 대비 330만원 증액된 이유는 2016. 7.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시장 비서실장의 직급이 3급(일반직 공무원)에서 2급(별정직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임.

<표-3> 201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단위 : 천원/년)

구분	기준액	비고
시장·도지사	서울, 경기 277,200 부산, 대구, 인천 198,000 기타 시도 167,200 세종특별자치시 133,000	
부시장·부지사	서울, 경기 193,600 부산, 대구, 인천 138,600 기타 시도 116,600 세종특별자치시 93,000	
기획관리실장	서울, 경기 24,200 부산, 대구, 인천 13,200 기타 시도 11,000	▶시·도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도 국장	2급 이상 9,900 (11,000) 3급 이하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자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부서운영업무추진비⁵⁾는 시장비서실 정원이 30인 이하 실·과로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35만원씩 총 420만원이 편성됨(표-4).

<표-4> 2017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

구분	기준액	비고
정원 5인 이하 실·과	월 100,000원	▶ 정무부시장실
정원 15인 이하 실·과	월 250,000원	▶ 정무수석비서관
정원 30인 이하 실·과	월 350,000원	▶ 시장비서실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자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한편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

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4)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

5)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 경비로 사용됨.

비 집행률은 2014년 65.5%, 2015년 66.9%, 2016년 10월 현재 47.1%에 머물러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4년 56.2%, 2015년 76.5%, 2016년 10월 현재 55.6%의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표-5).

-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양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시장비서실은 ‘예산 절감’과 ‘예비비 성격으로서의 예산 비축’을 이유로 들고 있음(2016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집행률 부진 관련 질의에 대한 비서실장 답변).
-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각 업무추진비의 편성 목적에 맞춰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함.
- 다시 말해 예년 평균 수준의 필요한 경비만큼을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기준액을 근거로 한 예산 편성에 따른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 내용에 따르면, 시장은 안전, 일자리, 복지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바, 이에 따른 제반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5>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4	103,000	67,441	35,559	<u>65.5</u>
	2015	103,000	68,946	34,054	<u>66.9</u>
	2016.10.	103,000	48,538	54,462	<u>47.1</u>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4	287,100	161,434	125,666	<u>56.2</u>
	2015	287,100	219,652	67,448	<u>76.5</u>
	2016.10.	283,800	157,917	125,883	<u>55.6</u>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4	4,200	4,095	105	97.5
	2015	4,200	4,126	74	98.2
	2016.10.	4,200	4,187	13	99.7

2) 정무부시장실

- 2017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1억 9,78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6> 2017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197,800	197,8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3,600	-	-
정 무 부 시 장	193,600	193,6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정 무 부 시 장 실	1,200	1,200	-	-
정 무 수 석 비 서 관	3,000	3,000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임(표-3).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표-4)에 따라,
 - 정무부시장실은 정원수가 5인 이하 실·과로서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정무수석비서관은 정원수가 15인 이하 실·과로서 월 25만원씩 총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14년 93.4%, 2015년 100%, 2016년 10월 말 현재 92.6% 등 높은 수준에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4년 98.1%, 2015년 99.9%, 2016년 10월 말 현재 89.2%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표-7).

<표-7>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4	217,800	203,441	14,359	93.4
	2015	193,600	193,595	5	100.0
	2016.10.	193,600	179,196	14,404	92.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4	4,020	3,944	76	98.1
	2015	4,200	4,194	6	99.9
	2016.10.	4,200	3,745	455	89.2

- 다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심야 시간(23시 이후) 사용’ 및 ‘1인 1회 사용 한도액(4만원) 초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집행된 사례가 지적됐으므로, 향후 이러한 시정 요구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

3) 종합검토

- 이상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과 시장비서실장 교체(3급→2급)로 인한 기관업무추진비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2016년 예산과 동일하고,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역시 특이 사항은 없음.
- 다만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진 문제는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온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기준액 상한액을 편성해오고 있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편성액의 적절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무부시장실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문제가 지적됐으므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¹⁾(행정자치부 훈령, 이하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²⁾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위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가 확인되면, 그 지출금액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부세³⁾ 감액 등을 할 수 있고,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제2호 관련 [별표 2] “업무추진비” 7.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사유로 감

1) 행정자치부 훈령 제151호(2009. 9. 30.), 이후 매년 새로운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업무추진비·지방보조금·일속직비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경비)을 미리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도록 함

3) 2015년 서울특별시 본청의 지방교부세 예산은 101,225백만 원

액된 지방교부세의 5배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총액을 삭감⁴⁾하도록 되어 있다.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제2호 관련 [별표 2] “업무추진비” 1.에 따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예산통계목: 203-01)는 시·도 본청의 경우 국장급 이상⁵⁾ 부서장을 대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과장(4급)⁶⁾이나 별정직(5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를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가. 정무수석비서관⁷⁾ 등의 경우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5급 상당(계약직 가급)인 소통특별보좌관 및 정무조정실장의 업무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범위와 유사하다는 사유로 기획조정실장에 상당하는 업무추진비 24,200,000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표 1]과 같이 5급 상당의 비서관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추진비 계 121,000,000원을 부당하게 편성⁸⁾하여 계 88,223,718원을 집행하였다.⁹⁾

[표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정무수석비서관 등)

(금액단위: 원)

-
- 4)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0. 7. 30. 행정자치부 훈령 제181호)부터 적용
 - 5) 시·도에서는 시장·도지사 및 부시장·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편성 가능
 - 6)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본청 4급 과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불가’로 명시되어 있음
 - 7) 위 관서에서 국회, 시의회,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정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위 관서에서 불인 직책명으로서 직제규정에 따른 정식직위가 아님
 - 8) 2011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5급인 정무조정실장에게 기획조정실장에 상당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아니함
 - 9) 2015년도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예산액	24,200,000	-	48,400,000	24,200,000	24,200,000	121,000,000
집행액	23,919,548	-	23,331,560	21,006,780	19,965,830	88,223,718
비고	정무조정실장	-	정무조정실장 소통특별보좌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본청 과장(4급)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는 본청 4급 과장을 대상으로¹⁰⁾ [표 2]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 1,870,820,000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편성하여 1,631,940,821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본청 4급 과장 119명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 383,180,000원(1인당 3,220,000원)을 편성하였다.

[표 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본청 4급 과장)

(단위: 명,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2015년
인원	117	110	116	119	119	581	119
예산액	376,740,000	354,200,000	373,520,000	383,180,000	383,180,000	1,870,820,000	383,180,000
집행액 ¹⁰⁾	246,003,747	293,445,284	339,030,587	376,016,042	377,445,161	1,631,940,821	-

주: 기획담당관, 경제정책과 등 주무 부서의 경우에는 실·국장과 과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총액으로 배정·집행함에 따라 과장만의 집행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집행률(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액/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에 따라 본청 4급 과장의 집행액(3,220천 원/인×집행률) 산정

10)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에서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위 관서의 본청 4급 과장에 대하여 연 3,220천 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2001년도 이후에는 특례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위 관서에서는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2014. 4. 22 본청 4급 과장에 대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구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함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제2호 관련 [별표 2] “업무추진비” 4.에 따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예산통계목: 204-01, 이하 “직책급”이라 한다)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급에 따라 월정액(1급 보조기관: 월 700,000원, 5급 보조기관: 월 100,000원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기구·정원 규정”이라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관서 본청에는 실·국·본부, 과·담당관을 행정기구로 설치하고, 보조기관인 실장·국장·본부장, 과장·담당관(일반직 4급 이상¹¹⁾)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 10. 23. “지방행정조직의 계(係)제 폐지¹²⁾에 따른 조직운동 지침”을 서울특별시 등 각 시·도에 시달하고, 과 내의 팀장(담당)은 인사·조직법규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이나 직위·직명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며, 위 관서를 제외한 경기도 등 15개 시·도에서는 5급 팀장에게 직책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¹³⁾

11) 기구·정원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에 따르면 위 관서의 과장·담당관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12) 구 기구·정원 규정이 1998. 8. 31. 개정되면서 행정기구였던 “계”가 폐지되었고, 위 관서에서 1998. 8. 12 「서울특별시 직제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과내 ‘계’의 설치 및 ‘계장(팀장)’의 직급을 규정한 제22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전부 삭제함에 따라 5급 팀장은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되었음

13) 위 관서를 제외한 경기도 등 15개 시·도에서는 5급 팀장에게 직책급을 편성한 사례가 없고(2014년),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에서는 부서원인 5급 팀장에게 직책급을 편성·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구·정원 규정 제20조제5항 관련 [별표 6]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에 따라 사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보조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본청의 팀장(5급), 별정직(4·5급) 비서관¹⁴⁾ 등에게 직책급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년도에 본청의 5급 팀장 602명에게 5급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월 100,000원의 직책급을 지급하기 위해 722,4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571명에게 계 3,428,400,00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하여 3,471,816,54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도 757,200,000원을 편성하였다.

[표 3] 직책급 편성 내역(본청 5급 팀장)

(단위: 명,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2015년
인원	516	562	575	602	602	571.4 (평균)	631
예산액	619,200,000	674,400,000	690,000,000	722,400,000	722,400,000	3,428,400,000	757,200,000
집행액 ^{*)}	669,141,200	670,951,490	658,722,880	715,359,080	757,641,890	3,471,816,540	-

주: 전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시점의 지급 인원 차이로 2010년도와 2014년도의 직책급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 다만, 본청 직책급 집행총액(시장~5급 팀장)이 직책급 예산총액을 초과하지는 아니함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4년 8월 별정직 5급인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 AL에게 1급(보조기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700,000원의 직책급을 지급하는 등 직책급을 받을 수 없는 별정직 4·5급 비서관인 AL 등 15명에게 2014년 6월부

업소·출장소의 보조기관은 기관장, 차장, 부장, 과장·담당관(5급)으로서 사업소 등의 5급 과장에게는 직책급 지급이 가능함

14)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서장급 이상의 보조기관에게 직책급을 편성할 수 있고 별정직 비서관은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직책급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터 2014년 12월까지 계 27,410,320원을 채무국에 편성된 직책급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1항” 및 “2항”의 내용 및 [표 4]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91,820,000원과 직책급 3,428,400,000원, 계 5,420,220,000원을 부당하게 예산편성하여 계 5,219,391,399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3,180,000원, 직책급 757,200,000원, 계 1,140,380,000원을 편성하였다.

[표 4]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부담 편성·집행 내역

(금액 단위: 원)

구분		부담 편성액		부담 집행액
		2010-2014년	2015년	2010-2014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무수석비서관 등	121,000,000	-	88,223,718
	본청 과장(4급)	1,870,820,000	383,180,000	1,631,940,821
	소계	1,991,820,000	383,180,000	1,720,164,539
직책급 업무추진비	본청 팀장(5급)	3,428,400,000	757,200,000	3,471,816,540
	비서관(4·5급)	-	-	27,410,320
	소계	3,428,400,000	757,200,000	3,499,226,860
계		5,420,220,000	1,140,380,000	5,219,391,399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3. 미협의기구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부적정

기구·정원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및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관서 본청에 설치할 수 있는 3급 이상 담당관의 수는 13개¹⁵⁾로 되어 있고, 3급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 없이 기구를 설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3급 이상 기구(이하 “미협의기구”라 한다)에 합법적인 행정기구와 똑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¹⁶⁾

15) 2014. 12. 1. 현재 13개 담당관이 모두 설치되어 있음(한시기구 제외)

16)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정식 직제로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실·국장에 대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표 5]와 같이 2011년도에 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설치한 교통운영관 등 9개의 3급 이상 미협의기구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 75,900,000원을 편성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 287,100,000원을 예산편성하여 271,546,655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도 교통운영관 등 11개의 3급 이상 미협의기구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 69,22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 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교통운영관 등 미협의기구)

(단위: 개,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2015년
미협의기구	교통운영관 등 9	교통운영관 등 9	교통운영관 등 11	교통운영관 등 12	-	교통운영관 등 11
예산액	75,900,000	66,000,000	79,200,000	66,000,000	287,100,000	69,220,000
집행액 ^{주)}	59,833,885	64,738,870	76,130,370	70,843,530	271,546,655	-

주: 주무 부서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률(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액 / 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에 따라 미협의기구에 대한 집행액 산정 ([표 2]의 '주'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위반되게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한 본청 4급 과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3,180,000원, 본청 5급 팀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757,200,000원, 계 1,140,380,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 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위반되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거나 위법한 임의기구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다는 의견 제시